평촌 어바인 퍼스트
URVINE FIRST

# 평촌 어바인 퍼스트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05.24(목) 입니다.(청약자격 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 기준일임) ■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며,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3항, 제25조3항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안양시는 물론 경기도,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2018.05.24(목) 현재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도 청약 가능합니다. 단 동일 순위내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안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우선공급 하며, 기타지역에서(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신청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 · 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 (단, 특별공급의 입주자 선정 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 · 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 분부터 적용)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 노약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동일인이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의 특별공급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주택전시관 방문 신청'에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주택전시관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신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에서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국민은행 접수 불가)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는 2015.04.01.이후 입주자모집공고 되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며, 85㎡이하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청약가점제』 및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추첨제』가 적용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의거 85㎡이하 주택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주택형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
- 2017. 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당첨자발표일이 2017.10.18 이후인 민영주택의 가점제로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하며,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 · 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고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urvine.co.kr)에 공개되며, 예비입주자 지위 공개 기간(최초 공급계약 체결일 +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방식이 추첨제에서 가점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 · 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선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각 주택형별 특별공급 종류별로 입주자를 선정
  ② ①번에서 입주자선정 후 남는 세대가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③ ②번 이후에도 낙첨자가 발생한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특별공급세대수의 40% 이내 예비입주자를 선정
  ④ 특별공급 세대수의 4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②번 선정 후에도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세대수로 전환함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 · 호수를 공개한 후 특별공급 예비자를 우선 배정하며 이후 남는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물량으로 전환하여 처리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주택에 한해 특별공급에 신청한 자는 일반공급 신청도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처리함. 또한, 동일인이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 중복청약시 모두 무효처리함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모델하우스(www.urvine.co.kr)를 운영하오니 직접 방문하지 않으셔도 견본주택 관람이 가능합니다.(단, 사이버모델하우스만을 관람하고 청약 시 경우에 따라서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기간 동안 실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 확인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73조 제3호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2018.06.19)부터 6개월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청약시점의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청약자격 완화 : 기존 '무주택세대주'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경우에도 신청가능(1세대에서 1명만 청약신청 가능)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과 같이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계속 적용
  - 청약통장 순위체계 간소화 및 청약통장 순위 발생요건 완화 : 수도권 1순위 청약자격 발생 요건은 "1년,12회 납입" 으로 변경(단, 청약통장별 해당 가입은행의 납입인정 예치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이어야 함)이며, 청약은 "1,2순위"방식으로 간소화
  - 입주자 저축 예치금액 변경기간 등 제한완화 : 예치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모든 규모에 청약 가능, 주택규모변경 기간(2년) 및 주택규모 상향 시 3개월 청약제한 기간(3개월)폐지
  - 민영주택 가점제 청약시 유주택자 감점제도 폐지 : 주택 소유 수에 따른 감점 폐지
  - 소형 저가주택 기준 완화 : 기존'60㎡이하+공시가격 7천만원 이하'에서 → '60㎡이하+공시가격 수도권 1억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 8천만원 이하'로 변경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당 사업지 1번, 47번국도 인접으로 인한 소음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민원제기 및 계약해제, 손해배상 청구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 하시어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셔야 합니다.

## Ⅰ 공급 내역 및 공급 금액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 도시정비과 – 제5324호 (2018.05.24.)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956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29층 34개동 총 3,850세대 (조합분양 1,656세대, 보류지 19세대, 임대 193세대 포함) 중 일반공급 1,982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202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202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399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61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 구분 | 공동주택 아파트코드 및 주택관리번호 |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 | 타입 | 세대별 계약면적 |  |  |  |  | 세대별 대지지분 | 공급 세대수 |  |  |  |  |  |  | 최하층우선 배정세대 (신청가능 세대수) |
|---|---|---|---|---|---|---|---|---|---|---|---|---|---|---|---|---|---|
|  |  |  |  | 세대별 공급면적 |  |  |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 계약면적 |  | 특별공급 |  |  |  |  | 일반 공급 | 계 |  |
|  |  |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소계 |  |  |  | 기관 추천 | 다자녀 | 신혼 부부 | 노부모 | 소계 |  |  |  |
| 민영주택 | 2018000687-01 | 39.2600 | 39 | 39.2600 | 18.3840 | 57.6440 | 27.7570 | 85.4010 | 20.8460 | 43 | 43 | 85 | 13 | 184 | 238 | 422 | 20 |
|  | 2018000687-02 | 46.9400A | 46A | 46.9400 | 20.7180 | 67.6580 | 33.1860 | 100.8440 | 24.9230 | 2 | 2 | 4 | 1 | 9 | 11 | 20 | 4 |
|  | 2018000687-03 | 46.9200B | 46B | 46.9200 | 21.4920 | 68.4120 | 33.1730 | 101.5850 | 24.9120 | 1 | 1 | 2 | – | 4 | 5 | 9 | 2 |
|  | 2018000687-04 | 46.8900C | 46C | 46.8900 | 21.0710 | 67.9610 | 33.1510 | 101.1120 | 24.8970 | 1 | 1 | 2 | – | 4 | 6 | 10 | 2 |
|  | 2018000687-05 | 59.8700A | 59A | 59.8700 | 25.5560 | 85.4260 | 42.3280 | 127.7540 | 31.7870 | 64 | 64 | 127 | 19 | 274 | 358 | 632 | 62 |
|  | 2018000687-06 | 59.5200B | 59B | 59.5200 | 26.3610 | 85.8810 | 42.0810 | 127.9620 | 31.6020 | 22 | 22 | 43 | 7 | 94 | 120 | 214 | 20 |
|  | 2018000687-07 | 84.6000A | 84A | 84.6000 | 29.7450 | 114.3450 | 59.8120 | 174.1570 | 44.9180 | 60 | 60 | 119 | 18 | 257 | 336 | 593 | 37 |
|  | 2018000687-08 | 84.1300B | 84B | 84.1300 | 30.9970 | 115.1270 | 59.4810 | 174.6080 | 44.6690 | 9 | 9 | 17 | 3 | 38 | 44 | 82 | 5 |
|  | 합 계 |  |  |  |  |  |  |  |  | 202 | 202 | 399 | 61 | 864 | 1,118 | 1,982 | 152 |

※ 주택형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타입별, 단지별 면적이 각각 상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기되고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각 세대별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분양가격을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단위세대 계약면적 등은 소수점이하 단수 정리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소수점 이하 면적변동에 대에서는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원)

| 주택형 | 층별 | 공급 세대수 | 공급금액 |  |  | 계약금(10%) |  | 중도금(60%) |  |  |  |  |  | 잔금30% |
|---|---|---|---|---|---|---|---|---|---|---|---|---|---|---|
|  |  |  | 대지비 | 건축비 | 계 | 1차 | 2차 | 1회(10%) | 2회(10%) | 3회(10%) | 4회(10%) | 5회(10%) | 6회(10%) | 입주지정일 |
|  |  |  |  |  |  | 2018-06-19 | 2018-07-18 | 2018-10-25 | 2019-02-25 | 2019-06-25 | 2019-11-25 | 2020-03-25 | 2020-08-25 |  |
| 39.2600 (101,102동) | 1층 | 17 | 114,780,000 | 155,320,000 | 270,100,000 | 10,000,000 | 17,010,000 | 27,010,000 | 27,010,000 | 27,010,000 | 27,010,000 | 27,010,000 | 27,010,000 | 81,030,000 |
|  | 2층 | 20 | 117,880,000 | 159,520,000 | 277,400,000 | 10,000,000 | 17,740,000 | 27,740,000 | 27,740,000 | 27,740,000 | 27,740,000 | 27,740,000 | 27,740,000 | 83,220,000 |
|  | 3~4층 | 40 | 120,390,000 | 162,910,000 | 283,300,000 | 10,000,000 | 18,330,000 | 28,330,000 | 28,330,000 | 28,330,000 | 28,330,000 | 28,330,000 | 28,330,000 | 84,990,000 |
|  | 5층 | 20 | 122,900,000 | 166,300,000 | 289,200,000 | 10,000,000 | 18,920,000 | 28,920,000 | 28,920,000 | 28,920,000 | 28,920,000 | 28,920,000 | 28,920,000 | 86,760,000 |
|  | 6~15층 | 159 | 126,810,000 | 171,590,000 | 298,400,000 | 10,000,000 | 19,840,000 | 29,840,000 | 29,840,000 | 29,840,000 | 29,840,000 | 29,840,000 | 29,840,000 | 89,520,000 |
|  | 16~29층 | 120 | 129,190,000 | 174,810,000 | 304,000,000 | 10,000,000 | 20,400,000 | 30,400,000 | 30,400,000 | 30,400,000 | 30,400,000 | 30,400,000 | 30,400,000 | 91,200,000 |
| 39.2600 (211동) | 6~15층 | 22 | 125,530,000 | 169,870,000 | 295,400,000 | 10,000,000 | 19,540,000 | 29,540,000 | 29,540,000 | 29,540,000 | 29,540,000 | 29,540,000 | 29,540,000 | 88,620,000 |
|  | 16~29층 | 24 | 127,870,000 | 173,030,000 | 300,900,000 | 10,000,000 | 20,090,000 | 30,090,000 | 30,090,000 | 30,090,000 | 30,090,000 | 30,090,000 | 30,090,000 | 90,270,000 |
| 46.9400A | 1층 | 2 | 138,790,000 | 187,810,000 | 326,600,000 | 10,000,000 | 22,660,000 | 32,660,000 | 32,660,000 | 32,660,000 | 32,660,000 | 32,660,000 | 32,660,000 | 97,980,000 |
|  | 2층 | 4 | 142,570,000 | 192,930,000 | 335,500,000 | 10,000,000 | 23,550,000 | 33,550,000 | 33,550,000 | 33,550,000 | 33,550,000 | 33,550,000 | 33,550,000 | 100,650,000 |
|  | 3~4층 | 8 | 145,630,000 | 197,070,000 | 342,700,000 | 10,000,000 | 24,270,000 | 34,270,000 | 34,270,000 | 34,270,000 | 34,270,000 | 34,270,000 | 34,270,000 | 102,810,000 |
|  | 5층 | 4 | 148,650,000 | 201,150,000 | 349,800,000 | 10,000,000 | 24,980,000 | 34,980,000 | 34,980,000 | 34,980,000 | 34,980,000 | 34,980,000 | 34,980,000 | 104,940,000 |
|  | 6~15층 | 1 | 153,370,000 | 207,530,000 | 360,900,000 | 10,000,000 | 26,090,000 | 36,090,000 | 36,090,000 | 36,090,000 | 36,090,000 | 36,090,000 | 36,090,000 | 108,270,000 |
|  | 16~29층 | 1 | 156,260,000 | 211,440,000 | 367,700,000 | 10,000,000 | 26,770,000 | 36,770,000 | 36,770,000 | 36,770,000 | 36,770,000 | 36,770,000 | 36,770,000 | 110,310,000 |
| 46.9200B | 1층 | 1 | 140,360,000 | 189,940,000 | 330,300,000 | 10,000,000 | 23,030,000 | 33,030,000 | 33,030,000 | 33,030,000 | 33,030,000 | 33,030,000 | 33,030,000 | 99,090,000 |
|  | 2층 | 2 | 144,190,000 | 195,110,000 | 339,300,000 | 10,000,000 | 23,930,000 | 33,930,000 | 33,930,000 | 33,930,000 | 33,930,000 | 33,930,000 | 33,930,000 | 101,790,000 |
|  | 3~4층 | 4 | 147,250,000 | 199,250,000 | 346,500,000 | 10,000,000 | 24,650,000 | 34,650,000 | 34,650,000 | 34,650,000 | 34,650,000 | 34,650,000 | 34,650,000 | 103,950,000 |
|  | 5층 | 2 | 150,310,000 | 203,390,000 | 353,700,000 | 10,000,000 | 25,370,000 | 35,370,000 | 35,370,000 | 35,370,000 | 35,370,000 | 35,370,000 | 35,370,000 | 106,110,000 |
| 46.8900C | 2층 | 1 | 140,410,000 | 189,990,000 | 330,400,000 | 10,000,000 | 23,040,000 | 33,040,000 | 33,040,000 | 33,040,000 | 33,040,000 | 33,040,000 | 33,040,000 | 99,120,000 |
|  | 3~4층 | 4 | 143,380,000 | 194,020,000 | 337,400,000 | 10,000,000 | 23,740,000 | 33,740,000 | 33,740,000 | 33,740,000 | 33,740,000 | 33,740,000 | 33,740,000 | 101,220,000 |
|  | 5층 | 2 | 146,350,000 | 198,050,000 | 344,400,000 | 10,000,000 | 24,440,000 | 34,440,000 | 34,440,000 | 34,440,000 | 34,440,000 | 34,440,000 | 34,440,000 | 103,320,000 |
|  | 6~15층 | 2 | 150,990,000 | 204,310,000 | 355,300,000 | 10,000,000 | 25,530,000 | 35,530,000 | 35,530,000 | 35,530,000 | 35,530,000 | 35,530,000 | 35,530,000 | 106,590,000 |
|  | 16~29층 | 1 | 153,830,000 | 208,170,000 | 362,000,000 | 10,000,000 | 26,200,000 | 36,200,000 | 36,200,000 | 36,200,000 | 36,200,000 | 36,200,000 | 36,200,000 | 108,600,000 |
| 59.8700A | 1층 | 41 | 175,250,000 | 237,150,000 | 412,400,000 | 10,000,000 | 31,240,000 | 41,240,000 | 41,240,000 | 41,240,000 | 41,240,000 | 41,240,000 | 41,240,000 | 123,720,000 |
|  | 2층 | 51 | 180,050,000 | 243,650,000 | 423,700,000 | 10,000,000 | 32,370,000 | 42,370,000 | 42,370,000 | 42,370,000 | 42,370,000 | 42,370,000 | 42,370,000 | 127,110,000 |
|  | 3~4층 | 125 | 183,880,000 | 248,820,000 | 432,700,000 | 10,000,000 | 33,270,000 | 43,270,000 | 43,270,000 | 43,270,000 | 43,270,000 | 43,270,000 | 43,270,000 | 129,810,000 |
|  | 5층 | 61 | 187,700,000 | 254,000,000 | 441,700,000 | 10,000,000 | 34,170,000 | 44,170,000 | 44,170,000 | 44,170,000 | 44,170,000 | 44,170,000 | 44,170,000 | 132,510,000 |
|  | 6~15층 | 197 | 193,650,000 | 262,050,000 | 455,700,000 | 10,000,000 | 35,570,000 | 45,570,000 | 45,570,000 | 45,570,000 | 45,570,000 | 45,570,000 | 45,570,000 | 136,710,000 |
|  | 16~29층 | 157 | 197,260,000 | 266,940,000 | 464,200,000 | 10,000,000 | 36,420,000 | 46,420,000 | 46,420,000 | 46,420,000 | 46,420,000 | 46,420,000 | 46,420,000 | 139,260,000 |
| 59.5200B | 1층 | 20 | 172,700,000 | 233,700,000 | 406,400,000 | 10,000,000 | 30,640,000 | 40,640,000 | 40,640,000 | 40,640,000 | 40,640,000 | 40,640,000 | 40,640,000 | 121,920,000 |
|  | 2층 | 20 | 177,420,000 | 240,080,000 | 417,500,000 | 10,000,000 | 31,750,000 | 41,750,000 | 41,750,000 | 41,750,000 | 41,750,000 | 41,750,000 | 41,750,000 | 125,250,000 |
|  | 3~4층 | 40 | 181,200,000 | 245,200,000 | 426,400,000 | 10,000,000 | 32,640,000 | 42,640,000 | 42,640,000 | 42,640,000 | 42,640,000 | 42,640,000 | 42,640,000 | 127,920,000 |
|  | 5층 | 20 | 184,980,000 | 250,320,000 | 435,300,000 | 10,000,000 | 33,530,000 | 43,530,000 | 43,530,000 | 43,530,000 | 43,530,000 | 43,530,000 | 43,530,000 | 130,590,000 |
|  | 6~15층 | 58 | 190,810,000 | 258,190,000 | 449,000,000 | 10,000,000 | 34,900,000 | 44,900,000 | 44,900,000 | 44,900,000 | 44,900,000 | 44,900,000 | 44,900,000 | 134,700,000 |
|  | 16~29층 | 56 | 194,420,000 | 263,080,000 | 457,500,000 | 10,000,000 | 35,750,000 | 45,750,000 | 45,750,000 | 45,750,000 | 45,750,000 | 45,750,000 | 45,750,000 | 137,250,000 |
| 84.6000A | 1층 | 19 | 234,580,000 | 317,420,000 | 552,000,000 | 10,000,000 | 45,200,000 | 55,200,000 | 55,200,000 | 55,200,000 | 55,200,000 | 55,200,000 | 55,200,000 | 165,600,000 |
|  | 2층 | 38 | 240,990,000 | 326,110,000 | 567,100,000 | 10,000,000 | 46,710,000 | 56,710,000 | 56,710,000 | 56,710,000 | 56,710,000 | 56,710,000 | 56,710,000 | 170,130,000 |
|  | 3~4층 | 76 | 246,130,000 | 333,070,000 | 579,200,000 | 10,000,000 | 47,920,000 | 57,920,000 | 57,920,000 | 57,920,000 | 57,920,000 | 57,920,000 | 57,920,000 | 173,760,000 |
|  | 5층 | 37 | 251,230,000 | 339,970,000 | 591,200,000 | 10,000,000 | 49,120,000 | 59,120,000 | 59,120,000 | 59,120,000 | 59,120,000 | 59,120,000 | 59,120,000 | 177,360,000 |
|  | 6~15층 | 240 | 259,180,000 | 350,720,000 | 609,900,000 | 10,000,000 | 50,990,000 | 60,990,000 | 60,990,000 | 60,990,000 | 60,990,000 | 60,990,000 | 60,990,000 | 182,970,000 |
|  | 16~29층 | 183 | 264,070,000 | 357,330,000 | 621,400,000 | 10,000,000 | 52,140,000 | 62,140,000 | 62,140,000 | 62,140,000 | 62,140,000 | 62,140,000 | 62,140,000 | 186,420,000 |
| 84.1300B | 1층 | 4 | 231,520,000 | 313,280,000 | 544,800,000 | 10,000,000 | 44,480,000 | 54,480,000 | 54,480,000 | 54,480,000 | 54,480,000 | 54,480,000 | 54,480,000 | 163,440,000 |
|  | 2층 | 5 | 237,850,000 | 321,850,000 | 559,700,000 | 10,000,000 | 45,970,000 | 55,970,000 | 55,970,000 | 55,970,000 | 55,970,000 | 55,970,000 | 55,970,000 | 167,910,000 |
|  | 3~4층 | 10 | 242,900,000 | 328,700,000 | 571,600,000 | 10,000,000 | 47,160,000 | 57,160,000 | 57,160,000 | 57,160,000 | 57,160,000 | 57,160,000 | 57,160,000 | 171,480,000 |
|  | 5층 | 5 | 247,960,000 | 335,540,000 | 583,500,000 | 10,000,000 | 48,350,000 | 58,350,000 | 58,350,000 | 58,350,000 | 58,350,000 | 58,350,000 | 58,350,000 | 175,050,000 |
|  | 6~15층 | 33 | 255,780,000 | 346,120,000 | 601,900,000 | 10,000,000 | 50,190,000 | 60,190,000 | 60,190,000 | 60,190,000 | 60,190,000 | 60,190,000 | 60,190,000 | 180,570,000 |
|  | 16~29층 | 25 | 260,580,000 | 352,620,000 | 613,200,000 | 10,000,000 | 51,320,000 | 61,320,000 | 61,320,000 | 61,320,000 | 61,320,000 | 61,320,000 | 61,320,000 | 183,960,000 |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 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4자리로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평형 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선납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선납할인율은 공급계약서 참고 요망).
※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주택형의 표기는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39,59A,84A,84B타입이 설치될 예정이며, 46A,46B,46C,59B타입은 견본주택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모델하우스 내 견본주택 모형 혹은 분양안내문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 포함된 가격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옵션)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이며, 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단, 소수점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상기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하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수점 이하 면적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의 층을 각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할 시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 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미납 시 연체료 부과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불가) • 입주 예정자의 사전 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3항 27호에 의거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입주자의 사전 방문을 할 예정임. • 입주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을 부과할 예정임.
- 모든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2017년 1월 20일부터 체결하는 최초 계약자는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외국인토지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토지법」 제9조에 따라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 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 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2005.07.01. 주민등록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 구 분 |  |  | 39 | 46A | 46B | 46C | 59A | 59B | 84A | 84B | 계 |
|---|---|---|---|---|---|---|---|---|---|---|---|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장애인 |  | 21 | 1 | 1 | 1 | 29 | 9 | 27 | 4 | 93 |
|  | 국가유공자등 보훈처 |  | 8 | 1 | – | – | 13 | 5 | 12 | 2 | 41 |
|  | 중소기업종사자 |  | 7 | – | – | – | 12 | 4 | 11 | 2 | 36 |
|  |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  | 3 | – | – | – | 4 | 2 | 4 | 1 | 14 |
|  | 우수선수 |  | 2 | – | – | – | 3 | 1 | 3 | – | 9 |
|  | 납북피해자 |  | 2 | – | – | – | 3 | 1 | 3 | – | 9 |
| 다자녀 특별공급 | 경기도(50%) |  | 22 | 1 | 1 | 1 | 32 | 11 | 30 | 5 | 103 |
|  | 서울/인천(50%) |  | 21 | 1 | – | – | 32 | 11 | 30 | 4 | 99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소득기준 | 우선공급(75%) | 64 | 3 | 2 | 2 | 95 | 32 | 89 | 13 | 300 |
|  |  | 일반공급(25%) | 21 | 1 | – | – | 32 | 11 | 30 | 4 | 99 |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13 | 1 | – | – | 19 | 7 | 18 | 3 | 61 |
|  |  |  | 184 | 9 | 4 | 4 | 274 | 94 | 257 | 38 | 864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5%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상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후 남은 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공통사항**

| 구 분 | 내 용 |
|---|---|
| 1회 한정 / 자격요건 | •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4항 무주택세대 구성원(단,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 세대주)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의거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또는 부적격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br>•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8조에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격요건 갖추어야 함.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1호부터 6호, 8호 중 제35조 1항 17호 제외) |
| 무주택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br>• 무주택여부 확인 대상자 : 세대주, 세대원(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br>– 주택공급 신청자가 혼인한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신청자와 주민등록 등본에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br>–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 · 비속<br>※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1년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제한]<br>–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br>–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br>※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br>세대주, 세대원(배우자 포함) 및 다음 각 목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2조제4호)<br>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br>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 · 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br>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br>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 청약자격 요건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br>–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은 제외)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 다자녀가구 특별공급<br>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이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br>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br>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총 납입 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단, 청약저축 가입자 중 상기 청약예금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통장을 변경한 자 포함,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없이 예치금 잔액은 청약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을 기준으로 산정함)<br>–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br>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br>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 일에 납부한 월 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br>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된 자 중 총 납입 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br>(단,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없이 예치금 잔액은 청약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을 기준으로 산정함)<br>※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산정방법**

| 구 분 | 신청자격 | 당첨자 선정방법 |
|---|---|---|
|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무주택세대구성원<br>※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한해 신청 가능함.<br>•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상)<br>(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철거주택 소유자 제외)<br>※ 추천기관 :<br>①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복무제대군인등 : 경기남부 보훈지청복지과<br>② 장애인 : 경기도청 · 서울시청 · 인천시청 장애인 복지과<br>③ 10년이상 복무한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br>④ 중소기업근로자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br>⑤ 우수선수 : 대한체육회 ⑥ 납북피해자 : 통일부 이산가족과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자만 신청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 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 하여야 하며, 노약자 · 인터넷 취약자만 견본주택 방문신청 가능함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 · 호수 배정) 및 계약 불가]<br>•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br>•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상)<br>※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3명 이상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하여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증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함<br>※ 자녀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됨)<br>※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br>※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br>※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시 해당지역(안양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미달 시 타 시 · 도에 배정함)<br>•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br>(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br>(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신혼부부 특별공급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를 말한다.) 이하일 것<br>•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상)<br>※ 임신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로 확인, 출산은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확인 함.<br>※ 임신의 경우 청약신청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 · 낙태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br>※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br>※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 •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대상 주택 수의 75%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 따른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를 말함.)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함.<br>※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br>•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br>–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를 정함<br>(1)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자(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br>(2) 제2순위 :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br>•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함<br>(1) 해당 주택건설 지역(안양시) 거주자<br>(2) 미성년인 자녀수가 많은 자(태아를 포함)<br>(3) 미성년 자녀수(태아를 포함)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br>※ 상기 미성년 자녀수를 산정할 때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이 경우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를 말함.)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자녀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함. |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br>•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이상(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이상)<br>–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함.<br>※ 무주택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br>※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보는 조항은 해당 특별공급에 미적용됨.<br>※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순서로 당첨자를 선정함<br>(1) 해당 주택건설 지역(안양시) 거주자가 우선함.<br>(2)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br>※ 가점제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의 청약가점 산정기준표로 산정함. (견본주택에 비치)<br>※ 특별공급 신청 시, 청약 가점 산정 기준표를 신청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며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 |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입주자 선정 후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입주선정자 명단에 관련된 전화문의는 일체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인터넷 청약이 어려운 자(정보취약 계층)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접수를 받으며, 당첨자 발표 및 동 · 호수 배정업무는 일반공급 입주자선정과 함께 금융결제원에서 수행합니다.